

# 2024년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기도 섬유(피혁)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사업화 견인을 위한 『2024년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업』의 시행계획 및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7일

경기도지사 ·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

사업개요

## 사업목적

- 도내 섬유(피혁)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 · 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

## 지원대상 : 도내 소재(본사 및 공장) 섬유·피혁 기업

-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참여 가능

## 지원규모 : 6개사 내외(기업당 1개 과제, 과제당 최대 1.4억원)

## 사업기간 : 총1년(협약일로부터 12개월)

## 지원내용 : 기업주도 방식의 섬유분야(피혁포함)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

## 전문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

## □ 지원내용

- 섬유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·시장개척 등 사업화 촉진
- 친환경/리사이클/고기능성 등 섬유산업 기술개발 중점 지원
- 우수 종료과제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예정(최대10백만원 이내)

## □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

- 지원금 : 과제 당 최대 1.4억원(총사업비의 70% 이내)
-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30% 이상(현금 10%이상)

[참고1] 사업비 계상 예시 (\*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도 지원금 1.4억 원 신청할 경우)

구 분	도 지원금	민간부담금		합 계
		민간현금	민간현물	
계산식	도 지원금≤(총 사업비×0.7)	현금≥(총 사업비×0.1)	총 사업비-(도지원금+민간현금)	-
금 액	140,000,000원	20,000,000원	40,000,000원	200,000,000원
비 중	70%	10%	20%	100%

## □ 기준일 :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‘공고일 (2024.3.7.)’ 기준

※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시까지

수행기관별		자 격
단독참여	주관연구기관 (기업) (①,②,③ 모두 충족)	①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설치·운영 ② 경기도 내 ‘등록공장’ 설치·운영 ([참고2]) ③ <b>접수마감일(2024.4.5.) 기준</b> , 경기도 내 ‘기업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 ([참고2]) 설치·운영
	공동참여	①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설치·운영 ② 경기도 내 ‘등록공장’ 설치·운영 ([참고2])
	공동연구기관	학 및 연구기관

## [참고2]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기준

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

■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‘기업 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

\*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

## □ 신청기간

-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: 2024. 4. 1.(월) 9:00 ~ 4. 5.(금) 15:00
  -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 이후 접수 불가(접수 마감 시간: 15:00)

## □ 신청방법(온라인만 가능)

- 경기도 R&D 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
  - ① 과제책임자 및 실무담당자,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회원가입(필수)
    - 접수 시, 신청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·제출
  - ② 과제관리 ▶ 접수관리 ▶ 신청서 ▶ 등록
  - ③ 분야별 공고선택 ▶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
  - ④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
    -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
    -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서류,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
    -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(단,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)
- 구비서류 제출
  - 사업계획서 파일명은 ‘2024섬유RnD\_기관명’ 으로 저장  
ex) 2024섬유RnD\_GBSA
  - 제반서류 파일명은 ‘2024섬유RnD\_기관명\_연번·서식명’ 으로 저장  
ex) 2024섬유RnD\_GBSA\_2.사업자등록증명원
  -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
    - ※ 반드시 업로드 버튼을 클릭
    - ※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수정 불가

## ① 신청 서류 목록

연번	서 식 명	해당 서류	
		필수	해당시
①	기술개요서 1부 (소정양식, 『서식1』 참조)	○	
②	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※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( <a href="https://www.hometax.go.kr/">https://www.hometax.go.kr/</a> )에서 <b>공고일(2024.3.7.) 이후 발급분 제출</b>	○	
③	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※ 영리기관(법인사업자)에 한하며, <b>공고일(2024.3.7.) 이후 발급분 제출</b>		○
④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( <a href="https://www.rnd.or.kr/">https://www.rnd.or.kr/</a> )에서 <b>공고일(2024.3.7.) 이후 발급분 제출</b>		○
⑤	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(소정양식, 『서식2』 참조, 5.지원제한 ③참조)	○	
⑥	주관연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	○	
⑦	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소정양식, 『서식3』 참조)	○	
⑧	기관대표,총괄책임자,소속기관의 NTIS 제한정보 확인서 각 1부 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ntis.go.kr/">http://ntis.go.kr/</a> )에서 <b>공고일(2024.3.7.) 이후 발급분 제출</b>	○	

## ② 발표평가 대상기관 제출 서류 목록(1차 서면평가 후 통과기관만 제출)

연번	서 식 명	해당 서류	
		필수	해당시
①	연구개발계획서 1부 (소정양식, 『서식4』 참조)	○	
②	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에 한하며, 최근(법인: '23년 귀속분, 개인사업자: '22년 귀속분)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'표준재무제표 증명(국세청 발급분)' 또는 '재무제표 확인(회계사사무사 확인본)' 원본 제출	○	
③	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(소정양식, 『서식5』 참조)	○	
④	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 각1부 (소정양식, 『서식6』 참조)	○	
⑤	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(소정양식, 『서식7』 참조)		○
⑥	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(하단 [참고4] 참조)		○
⑦	기타 전문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		○

※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,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

- 전산등록 마감일[2024. 4. 5.(금)] 기준,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·주관 연구기관장·연구책임자·공동연구기관·공동연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- ① 기존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(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) 중 2021. 3. 7.(3년) 이후에 종료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 
 ※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,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
- ②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-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    -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구분 없이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
    -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
    - 신청과제가 해당사업(분야)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    -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
- ③ 이미 개발하였거나 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
  - 단,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 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
  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://www.ntis.go.kr>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
  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 이나 “불성실

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

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

⑤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주관연구기관의 장, 공동연구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

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
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율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(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서(세부주관 책임자 포함)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- 참여연구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기관 책임자도 포함)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\*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% 이상(연구책임자 30% 이상)이어야 한다.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

\* (기관 기본사업)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

⑦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⑧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

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함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.

구분	사전지원제외
<p><b>검토기준</b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4.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5.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</li> <li>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li> <li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</li> </ol>
<p><b>조치</b></p>	<p>·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의 경우 “사전지원제외 대상” 으로 처리</p>

**6**

**기술료**

-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(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 등)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
- 다만,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불성실수행” 이 아닌 경우,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
[참고3]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술료율(공고기간 중 게시 예정)  
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을 따름

## □ 평가기준

## ○ 사전 적격심사

- 서류검토 :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, 과제 중복성, 제재사항 등
- 현장조사(필요시) :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(양산)능력 등 현장 확인

## ○ 서면평가 : 사전 적격심사(서류 및 현장)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1차적으로 심사·평가

평가항목	세부 평가지표	배점
연구개발 지원 필요성	- 일자리 창출효과, 사회/경제적 파급효과 - 연구개발 선도, 기술격차 해소 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	20점
연구개발 추진계획	- 연구개발 추진전략의 적절성 -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적절성	20점
연구개발 목표달성 가능성	- 목표의 구체성, 목표의 기술적 수준 - 계획의 실현가능성, 계획의 구체성 - 연구책임자 역량, 참여연구원 규모 및 역량, 연구인프라,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	40점
사업화 계획	-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 -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시장 진입 가능성 - 제품생산, 마케팅, 판매 등 사업화역량	20점
<b>합 계</b>		<b>100점</b>

## ○ 발표평가 :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

## 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세부 평가지표	배점
개발계획의 적정성	-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과 명확성 - 보유 인프라의 적정성	10점
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	- 기술의 차별성, 진보성, 신규성 - 보유기술의 수준	30점
목표달성 가능성	- 목표달성 가능성 - 기술적 파급효과 - 기술의 개발능력	20점
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·마케팅 역량	- 시장규모 및 성장성 - 사업화 가능성 및 준비역량 -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	40점
가산점(최대 5점) ※ [참고4]		5점
<b>합 계</b>		<b>105점</b>

- 최종선정 :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6개 과제 내외 선정  
 ※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 
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,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**[참고4]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(※ 평가위원회(발표) 평가 시 아래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)**

- 가산점 적용기준

-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※ 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
- ② 가산점은 **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** 적용
-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유효기간은 전산등록 마감일[2024. 4. 5.(금)]을 기준으로 함
- ④ 가산점은 최대 5점 부여

- 가산점 적용대상

- ①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북부에 소재한 기업(3점)
  - 경기도 북부 :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동두천, 연천, 가평
- ② 대·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 제출 기업(2점)
- ③ 경기도가 선정한 ‘일자리 우수기업’이 주관하는 과제(2점).
- ④ 경기도가 선정한 ‘유망 중소기업’이 주관하는 과제(2점)
- ⑤ 경기도 산단 RE100 참여인증서 제출 기업(2점)

-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(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③표시광고법 ④근로기준법 ⑤산업안전보건법 ⑥폐기물관리법 ⑦대기환경보전법 ⑧소음진동관리법 ⑨물환경보전법 ⑩국세기본법 ⑪지방세기본법) 분야 중 범위만 내역이 있는 기업은 발표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정

**[참고5] 법 위반 적용법률 11개**

적용법률		내 용
I 공정	① 공정거래법	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,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
	② 하도급법	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(原事業者)와 수급사업자(受給事業者)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, 균형발전
	③ 표시광고법	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·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
II 노동	④ 근로기준법	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
	⑤ 산업안전보건법	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
III 환경	⑥ 폐기물관리법	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
	⑦ 대기환경보전법	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(危害)를 예방,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
	⑧ 소음진동관리법	공장·건설공사장·도로·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,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
	⑨ 물환경보전법	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, 하천·호소(湖沼)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
IV 납세	⑩ 국세기본법	국세,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·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(課稅),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
	⑪ 지방세기본법	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연구기관, 참여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
  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  - 경기도 범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범위반 사실 조회  
(경기도 고시 제2024-22호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범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」)
  -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 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- 이행보증보험 가입
  - 본 사업의 수행기관(대학 및 비영리기관 포함)으로 선정된 경우, 도 지원금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
  - 다만,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인정
-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연계(필수)
  - 연구비는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법인 카드(사업비전용카드)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
- 과제선정 취소
  -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    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
    - PMS(R&D관리시스템)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
    -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
    - 기 개발·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
    -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  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
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-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-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(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)을 상실한 경우

□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·서비스가 수요처 등에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협조해야 함

□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

□ R&D 졸업제 시행 : 최대 3회까지만 경기도 섬유 기술개발사업 지원 가능  
 ○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 당 총 3회를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능하며, 2018년부터 기산됨

□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

-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과금 부과  
 ※ 『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부터 9조등에 의거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
-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
-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

□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등을 적용함
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」
-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·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

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
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RnD산학협력팀 송재민 대리

☎ 031) 259-6784 / ✉ jmsong@gbsa.or.kr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바랍니다.

- 서식 :
1. 기술개요서
  2.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사업 이중수혜금지 서약서
  3.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  4. 연구개발계획서
  5.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
  6.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여부 확인서
  7. 참여의사 확인서

- 별첨 :
1. 사업계획서 작성요령
  2. 산업기술분류표
  3. 정량적 목표 항목의 분야별 성능지표